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나59755 판결 [부당이득금등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윤경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최재원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단1371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6.부터 2002. 11. 4.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38,000,000원(= 2001. 9. 6.자 2,000만 원 + 2002. 4. 15.자 900만 원 + 2002. 4. 15.자 300만 원 + 2002. 11. 4.자 6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2. 12. 5.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의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잔존 채무액을 합계 14,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2. 12. 11.부터 2006. 1. 9.까지 피고에게 별지 '원고 주장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7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정산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7,783,217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와 같이 초과 변제받은 금원 중 일부인 7,214,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2. 12. 5. 피고와 사이에 모든 채무를 14,500,000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액이 위 일시경 14,500,000원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5.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채무가 14,500,000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5호증(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그 잔존 채무액을 14,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년경부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대여금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액수의 돈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다.

②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2. 5.까지 14,5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2001. 9. 6.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피고의 며느리인 C으로 한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었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4757㎡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금전 채무와는 별도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위 대여금의 변제나 이에 대한 C 명의 근저당등기의 말소 등에 대해 아무런 기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위 대여금 채무까지 포함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④ 원고는 C이 위 2001. 9. 6.자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C을 상대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28527호) 및 배당이의의 소(부산지방법원 2009가단76542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법원은 ‘2001. 9. 6.자 대여금 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모든 채무액을 14,5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¹⁾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그 후 원고는 아들 E을 통하여 ‘원고는 2002. 12. 5. 피고와 사이에 모든 채무를 14,5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한 후 위 정산금의 원리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7,214,601원을 더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01. 9. 6.자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C과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아들 E이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133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정산금 채무에 2001. 9. 6.자 대여금 채무가 포함되었다거나 위 정산금을 초과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부산고등법원 2019나57278) 및 상고(대법원 2020다233344)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7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정산금 14,5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2. 11.부터 2003. 5. 28.까지 피고 또는 C, F 명의 계좌로 합계 9,970,000원²⁾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원고 주장의 변제내역 중 2005. 4. 25.자 3,000,000원³⁾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G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5. 4. 25.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원고의 보증금 3,000,000원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30호증(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영수증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및 형식,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06. 1. 9. 피고에게 지급한 14,000,000원⁴⁾도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갑 제31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 사건 정산금 채무와는 별개인 ‘2002. 5. 23.자 대여금 11,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정산금 14,5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

원고 주장 변제내역표

원금	변제금	변제일	일수	이율(%)	발생이자	이자누계
14,500,000	① 50,000	2002. 12. 11.	7	24%	66,740	16,740
14,500,000	② 210,000	2003. 1. 3.	23	24%	219,288	26,028
14,500,000	③ 220,000	2003. 1. 8.	5	24%	47,671	0
14,353,699	④ 50,000	2003. 1. 30.	22	24%	207,637	157,637
14,353,699	⑤ 160,000	2003. 2. 13.	14	24%	132,132	129,769
14,353,699	⑥ 9,180,000	2003. 3. 27.	42	24%	396,398	0
5,699,866	⑦ 50,000	2003. 5. 27.	61	24%	227,994	177,994
5,699,866	⑧ 50,000	2003. 5. 28.	1	24%	3,737	131,731
5,699,866	⑨ 3,000,000	2005. 4. 25.	697	24%	2,612,256	0
5,312,122	⑩ 14,000,000	2006. 1. 9.	259	24%	904,661	0
-7,783,217	26,970,000					

1) 부산지방법원 2007나9853 및 대법원 2008다14862, 부산지방법원 2010나1521 및 대법원 2012다32485

2) '원고 주장 변제내역표' 중 '변제금'란 순번 ① 내지 ⑧ 기재 부분

3) '원고 주장 변제내역표' 중 '변제금'란 순번 ⑨ 기재 부분

4) '원고 주장 변제내역표' 중 '변제금'란 순번 ⑩ 기재 부분